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건물 16층(04518) /전화(02)2670-9191 /전송(02)2670-9213 /E-mail:election@kctu.org

문서번호 민주선거 2023 - 773호

시행일자 2023. 10. 23.

수 신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가맹·산하조직 사무처장, 선관위원, 선거사무담당자

제 목 민주노동총 선거관리규정의 용어 정의 및 중립 의무에 관한 건

1.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정권 퇴진!!”

노조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임금·일자리·공공성 쟁취!

2. 민주노동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차 회의 결정에 의거, 선거관리규정의 용어정의 [첨부1] 및 조직과 사람의 중립의무 규정에 따른 유권 해석[첨부2]을 안내합니다. 선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첨부1] 선거관리규정의 용어 정의

[첨부2] 조직과 사람의 중립 의무

※ 문의 : 김선민 직선제담당국장(02-2670-9192)

민주노동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02-2670-9191)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선규



[첨부1] 선거관리규정의 용어 정의

1) 선거관리규정

제32조(후보자등록)

<내용 생략>

- ③ 민주노총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총국 성원, 가맹조직 사무처 성원, 산하조직 사무처 성원은 현직을 사퇴한 후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무처 성원이 채용된 상근자인 경우, 민주노총 임원선거 출마에 사직·휴직·보직사임 등 구체적인 처우에 관하여는 소속 조직의 규약·규정 및 관행에 따르되, 사직처리 여부는 후보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가맹조직 중앙의 임원 및 각종 위원회의 장, 산하조직 임원 및 각종 위원회의 장이 후보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후보자 확정공고시부터 선거종료시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39조(선거운동원)

<내용 생략>

- ④ 민주노총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총국 성원, 가맹조직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중앙 사무처 성원, 산하조직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처 성원은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40조(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등)

- ① 총연맹·가맹조직·산하조직 및 그에 소속된 지역본부·노조·지부·지회 등 각급 단위조직과 각 조직의 위원회·부설기관 등 각 산하기구(이하 ‘각급 단위조직과 그 산하기구’라 한다)는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각급 단위조직과 그 산하기구는 다음과 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 및 균등한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내용 생략>

- ③ 각급 단위조직과 그 산하기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 명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각급 단위조직 또는 산하기구는 그의 이름으로 개설된 소셜미디어(SNS)계정·홈페이지 게시판 게시·노조 기관지 및 선전물 게재 등의 방법, 대중연설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
 2. 각급 단위조직 또는 산하기구가 그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④ 제1항의 각급 단위조직 및 그 산하기구의 공식 직함을 사용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1조(임원 등의 선거운동금지)

민주노총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총국 성원, 가맹조직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중앙 사무처 성원, 산하조직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처

성원은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후보에게 전달하거나 대중에게 공표하는 행위
2. 업무로 얻은 기회 또는 업무상 권한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3. 기타 선거공보물, 후보자 개인홍보물, 각종 홈페이지나 신문, 모바일메시지, 대중연설 등을 통해 본인의 이름으로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는 행위

2) 가맹조직

(1) 가맹조직

-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의 ‘가맹조직’ 이란 규약 제5조(구성)에 의거 하여, 민주노총 가맹이 승인된 16개 산별노조(연맹)를 말함.

(2) 가맹조직 중앙의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 선거관리규정 제32조(후보자등록)·민주노총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14조(후보자등록)의 ‘가맹조직 중앙의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이란 해당 산별노조(연맹)의 산하 조직단위(지역·업종 등)가 아닌 산별노조(연맹) ‘중앙’ 의 임원 및 각종 위원회의 장을 말함.

(3) 가맹조직의 사무처

- 선거관리규정 제32조(후보자등록)·민주노총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14조(후보자등록)의 ‘가맹조직 사무처 성원’ 이란 고용 형태(채용, 파견 등)와 근무 지역(중앙, 지역, 업종 등)에 관계 없이 해당 산별노조(연맹)의 사무처(근무하는 자, 직책을 가진 자) 전체 인원을 말함. 산별노조(연맹)의 지역조직과 업종조직 등의 사무처도 포함되며, 산별노조(연맹)의 단위조직이나 연맹 소속 소산별노조의 간부는 해당하지 않음.
- 선거관리규정 제39조(선거운동원), 제41조(임원 등의 선거운동금지), 민주노총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19조(선거운동)의 ‘가맹조직 중앙 사무처 성원’ 이란 고용 형태와 근무 형태와 관계 없이 해당 산별노조(연맹) ‘중앙’ 에서 근무하는(직책을 가진) 사무처 인원을 말함.
- 민주노총 선관위 유권해석[20201029_002]에 의거, 가맹조직의 채용 상근자라도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무처 성원은 선거운동금지 대상이 아님.

3) 산하조직

(1) 산하조직

- 선거관리규정의 ‘산하조직’ 이란 규약 제6조(지역본부)에 의거,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한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를 말함. 필요에 의해 설치된 지역지부는 포함되지 않음.

(2) 산하조직의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 선거관리규정 제32조(후보자등록), 제39조(선거운동원), 제41조(임원 등의 선거운동금지), 민주노총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14조(후보자등록), 제19조(선거운동)의 ‘산하조직의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이란 해당 지역본부의 산하 조직단위(지역지부, 지구협의회 등)를 포함하지 않은 ‘지역본부’의 임원 및 각종 위원회(상설 및 특별)의 장을 말함.

(3) 산하조직의 사무처

- 선거관리규정 제32조(후보자등록), 제39조(선거운동원), 제41조(임원 등의 선거운동금지), 민주노총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14조(후보자등록), 제19조(선거운동)의 ‘산하조직 사무처 성원’ 이란 고용 형태(채용, 파견 등)와 근무 조직단위(지역본부, 지역지부 등)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본부 관할지역 내의 사무처 전체 인원을 말함.

4) 각급 단위조직과 그 산하기구

(1) 단위조직

- ‘단위조직’ 이란 산별노조(연맹)가 조직 운영을 위해 두고 있는 자체 조직체계 상의 조직 단위(지역조직, 업종조직, 본부, 지부, 위원회 등)가 아닌, 하나의 사업장 단위를 말함.
- 2020년 민주노총 70차 정기대회 결정 : 기업별노조는 하나의 단위조직으로, 산별 또는 업종별 단일노조인 경우 그 노조의 규약 및 방침이 정한 각 기초조직(지회 또는 지부)을 단위조직으로 한다.

(2) 각급 단위조직

- ‘각급 단위조직’ 이란 ‘각급 단위’ 조직 전체를 말함. 산별노조, 업종본부, 지역지부, 지회, 분회 등 상급단위조직과 하급단위조직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임.
- 선거관리규정 제40조(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등) 제1항 ‘총연맹·가맹조직·산하조직 및 그에 소속된 지역본부·노조·지부·지회 등 각급 단위조직’에 의거, ‘각급 단위조직’ 이란 민주노총부터 산별노조(연맹), 민주노총 지역본부, 산별노조(연맹)의 본부·지부·지회, 민주노총 지역지부까지 민주노총 소속의 모든 조직을 말함.

(3) 각급 단위조직과 그 산하기구

- ‘각급 단위조직과 그 산하기구’ 란 민주노총 소속의 모든 조직과 해당 조직이 두고 있는 각종 위원회 및 특별기구를 모두 포함하는 문구임.

5) 후보등록에 따른 사퇴 및 직무정지

(1) 민주노총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후보 등록 시 반드시 ‘사퇴’ 해야함. 각종 위원회는 상설·특별 등 모든 위원회를 말함.

(2) 산하조직(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후보 등록 시 확정공고시부터 선거종료시까지 직무정지. 각종 위원회는 상설·특별 등 모든 위원회를 말함. 본선 기준 직무정지기간은 10/27 ~ 11/28임. 민주노총지역본부의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은 대상이 아님.

(3) 가맹조직(산별·연맹)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후보 등록 시 확정공고시부터 선거종료시까지 직무정지. 각종 위원회는 상설·특별 등 모든 위원회를 말함. 본선 기준 직무정지기간은 10/27 ~ 11/28임. 산별노조(연맹)의 지역조직, 업종조직 등의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은 대상이 아님.

(4) 민주노총·가맹조직·산하조직 사무처 성원

-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후보 등록 시 반드시 ‘사퇴’ 해야함. 고용 형태(채용, 파견 등)와 근무 형태(상근, 비상근 등), 근무 지역(중앙, 지역, 업종 등)에 관계없이 각 조직의 사무처 전체 인원을 말함.
- 단, ‘사퇴’ 로 인한 사직, 휴직 등의 처리는 소속 조직의 규약·규정 및 관행에 따름. 사직, 휴직 등의 처리 여부는 후보 등록과 무관함.

6)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간 선거관리규정의 적용

(1) 기본 원칙과 예외

-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선거에 한해,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과 가맹조직 선거관리규정의 내용이 다른 경우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을 우선 적용함. 단, 가맹조직 선거관리규정이 더 높은 수위·기준인 경우 해당 가맹조직 조합원(후보자 포함)은 소속 가맹조직의 선거관리규정을 적용받게됨.

(2) 적용사례 1 _ 가맹조직 소속 지역지부, 지역본부, 업종본부 등의 임원의 후보 출마

- 가맹조직의 지역지부장이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상 ‘사퇴’ 혹은 ‘직무정지’ 의 대상이 아님.
- 단, 해당 가맹조직의 규정·규칙이나 의결단위의 결정, 선관위의 유권해석 등으로 상급단체 임원 선거 후보 출마 시 ‘사퇴’, ‘사퇴’ 혹은 ‘직무정지’ 등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후보자는 소속 가맹조직이 정한 조치를 따라야 함.

(3) 적용사례 2 _ 가맹조직 소속 지역지부, 지역본부, 업종본부 등의 임원의 선거운동

- 가맹조직의 지역본부장(해당 가맹조직의 중집위원)이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선거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상 직함(직책)을 밝히지 않으면 선거운동위반이 아님.
- 단, 해당 가맹조직의 규정·규칙이나 의결단위의 결정, 선관위의 유권해석 등으로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은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가맹조직의 중집 성원인 위 지역본부장은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4) 적용사례 3 _ 가맹조직 사무처 성원

- 특정 가맹조직의 선거관리규정 상 사무처 성원의 후보출마(현직유지)나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않을 수 있음.
- 하지만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선거 시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가맹조직 사무처는 후보 등록 시 현직을 사퇴해야 함. 가맹조직 현직 사무처는 선거운동이 금지됨.

[첨부2] 조직과 사람의 중립 의무

1) 선거관리규정

제37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조합 활동
- ② 후보자와 조합원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40조(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등)

- ① 총연맹·가맹조직·산하조직 및 그에 소속된 지역본부·노조·지부·지회 등 각급 단위조직과 각 조직의 위원회·부설기관 등 각 산하기구(이하 '각급 단위조직과 그 산하기구'라 한다)는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각급 단위조직과 그 산하기구는 다음과 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 및 균등한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1. 각급 단위조직과 그 산하기구의 그 명의로 개설한 소셜미디어(SNS) 계정·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노조 기관지·선전물에 후보자의 개인홍보물 등 표시물의 게시 또는 게재 등을 허용하는 경우
 2. 각급 단위조직과 그 산하기구의 관리하에 행하는 회의 및 회합에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경우
- ③ 각급 단위조직과 그 산하기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 명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각급 단위조직 또는 산하기구는 그의 이름으로 개설된 소셜미디어(SNS)계정·홈페이지 게시판 게시·노조 기관지 및 선전물 게재 등의 방법, 대중연설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
 2. 각급 단위조직 또는 산하기구가 그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④ 제1항의 각급 단위조직 및 그 산하기구의 공식 직함을 사용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1조(임원 등의 선거운동금지) 민주노총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총국 성원, 가맹조

직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중앙 사무처 성원, 산하조직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처 성원은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후보에게 전달하거나 대중에게 공표하는 행위 (2023.08.22. 개정)
2. 업무로 얻은 기회 또는 업무상 권한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3. 기타 선거공보물, 후보자 개인홍보물, 각종 홈페이지나 신문, 모바일메시지, 대중연설 등을 통해 본인의 이름으로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는 행위**

2) 조직의 중립 의무 - 제40조(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등)

- 선거관리규정 제40조(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등)는 기본적으로 조직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위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모든 조직과 그 산하기구의 중립 의무’가 주요 내용임.
- 제40조 제4항엔 특별히 ‘사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음. 민주노총 소속의 모든 조직과 그 산하기구의 간부는 ‘공식 직함’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임.
- 제40조 제4항을 반대로 해석하면 민주노총 소속 조직의 모든 간부는 ‘직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3) 간부의 중립 의무 - 제41조(임원 등의 선거운동금지)

- 선거관리규정 제41조(임원 등의 선거운동금지)·민주노총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19조(선거운동)는 어떤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을 정하고 있음. 민주노총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총국 성원, 가맹조직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중앙 사무처 성원, 산하조직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처 성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즉, 제41조(임원 등의 선거운동금지)는 제40조 제4항에서 정한 ‘민주노총 소속 조직의 모든 간부는 공식 직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을 담고 있는 조항임.

4) 사람의 중립 의무 - 제37조(선거운동), 제40조, 제41조

- 선거관리규정 제32조(후보자등록), 제37조(선거운동), 제40조(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등), 제41조(임원 등의 선거운동금지), 민주노총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19조(선거운동)에 의거, 후보자 및 조합원, 간부의 중립 의무는 다음과 같음.
- 민주노총 소속의 모든 조합원 및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단, 후보자를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조직의 모든 간부는 공식 직함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후보자가 직무정지의 대상인 가맹조직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산하조직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인 경우에도 직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하지만, 민주노총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총국 성원, 가맹조직 중앙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중앙 사무처 성원, 산하조직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처 성원은 직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선거 시 선거운동 가능 여부 표>

①	②	③	④
민주노총 소속의 모든 조합원 (후보자 포함)	민주노총 소속 조직의 모든 간부 (후보자 포함)	후보자가 ▶가맹조직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산하조직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민주노총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총국 성원 ▶가맹조직 중앙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중앙 사무처 성원 ▶산하조직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처 성원
선거운동 가능	직함 없이 선거운동 가능	직함 없이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 불가

※ ‘후보자’란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직선의 후보자를 말함.

5)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중립 의무

(1)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후보자 _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

-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후보자는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및 민주노총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본인의 현직사퇴-①·직무정지-③·현직유지-② 여부에 따라 <선거운동 가능 여부 표> 해당 번호의 선거운동이 가능함.

(2) 동시선거 가맹조직·단위조직 임원 후보자_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

- 동시선거를 치르는 산별노조(연맹)·단위조직 임원 후보자는 해당 산별노조(연맹)·단위조직의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본인의 현직사퇴-①·직무정지-②·현직유지-②④ 여부에 따라 위 <선거운동 가능 여부 표> 해당 번호의 선거운동이 가능함.

(3)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후보자_동시선거 가맹조직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

-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후보자의 동시선거 가맹조직 임원 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현직 유지 여부에 따라 전면 허용되거나 직함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허용될 수 있음. 단, 해당 가맹조직의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금지될 수 있음.